

포화나의 시작, 활기찬 노후

2017년 재무감사 결과보고

2017. 12.

□ 감사목적

- 우리 원 퇴직금 운용 관련 업무의 내용·절차·방법 등에 대한 자체 감사를 통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

□ 감사개요

- 감사일시 : 2017.11.27(월) ~ 12.08(금)
- 감사대상 : ○○○○부
- 대상기간 : '15. 1. ~ '17. 11.
- 점 검 자 : 강○○(감사부서장), 전○○(감사담당)
- 감사사항
 - 우리 원 퇴직금 운용 관련 업무의 내용·절차·방법 등 적정성
- 감사방법 : 서면 및 실지감사

□ 지적사항 총괄

(단위 : 건, 원)

합계		징계	경고	시정	개선	주의	통보	회수
건수	금액							
5	-	-	-	2	1	1	-	1

□ 감사결과

- 퇴직금중간정산 평균임금산정 기준일 결재권자 부적정
 - 우리원 「퇴직금중간정산 시행규칙」 제5조(지급액 산정기준 등) 2항에 의하면 “평균임금산정을 위한 기준일은 매 중간정산 시행 시에 원장이 정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으나, ○○○○부에서는 퇴직금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 기준일 정함과 퇴직금 지급 등 업무 관련하여 원장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○○○○실장의 전결로 갈음하였고,(시정)
 - ○○○○부의 우리원 위임전결예규에도 ○○○○부의 회계업무 중 퇴직금 관련 업무는 실장 전결로 정하고 있어 우리원 「퇴직금중간정산 시행규칙」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하고 있음.(시정)

○ 퇴직금중간정산 시 복리후생대부금 상환 및 회수 부적정

- 우리원 「퇴직금중간정산 시행규칙」 제8조(대부제도 등과의 관계) 1항에 의하면 “중간정산자는 복리후생대부금 대부잔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으나,
- ○○○○○부 이○○ 대리는 2016.5.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으면서 이전의 복리후생대부금 잔액을 일시 상환하지 않고 대부금 잔액에 대하여 2017.3.부터 분할상환 중이며,(회수)
- ○○○○실 정○○ ○장은 퇴직금 중간정산 후 복리후생대부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나 퇴직금중간정산 지급일로부터 3개월 20여일 이후에야 복리후생대부금을 뒤늦게 상환하였고,
- ○○○○부는 복리후생대부금 대부자에 대한 퇴직금중간정산 지급 이후 대부금 잔액 회수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음.(주의)

○ 퇴직금중간정산 시행시기 부적정

- 우리원 「보수규정」 제16조(퇴직금 정산)에 의하면 “①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할 경우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고,
-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8조2항에 의하면 “사용자는 ‘주택구입 등...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.”로 법으로 정하고 있으나,
- 현재 우리원 「퇴직급여중간정산 시행규칙」 제11조(시행시기)에 의하면 “중간정산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하반기 중 1회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그 시행 시기는 원장이 공고하는 때로 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어
- 우리원 「보수규정」 제16조(퇴직금 정산) ①항 및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8조2항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근로자의 권리보장을 개선 필요.(개선)